

최미영	부서장	44	74	2,315,367	-	-	2119000125
이대석	차장	41	74	2,315,367	-	-	2120001220
김태현	차장	40	74	2,315,367	-	-	2119000109
윤유라	대리	31	74	2,315,367	-	-	2121001284

※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, '책임투자운용인력'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.
 ※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 (인터넷주소 <http://ds.kofia.or.kr>) 단,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▶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

기간	운용전문인력
2019.01.25 ~ 현재	최미영
2020.09.17 ~ 현재	이대석
2019.01.24 ~ 현재	김태현
2021.07.16 ~ 현재	윤유라

5. 비용 현황

▶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전기		당기		
	금액	비율	금액	비율	
자산운용사	2	0.03	2	0.03	
판매회사	9	0.13	8	0.13	
펀드재산보관회사(신탁업자)	0	-	0	-	
일반사무관리회사	0	-	0	-	
보수합계	11	0.17	10	0.17	
기타비용	0	-	0	-	
매매 중개수수료	단순매매 중개수수료	3	0.05	2	0.04
	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	0	-	0	-
	합계	3	0.05	2	0.04
증권거래세	0	-	0	-	

※ 펀드의 순자산총액(기간평균)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.
 ※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,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,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.
 ※ 성과보수내역: 해당 없음
 ※ 발행분담금내역: 해당 없음

▶ 총보수, 비용비율

(단위: 연환산, %)

	총보수·비용비율(A)	매매·중개수수료 비율(B)	합계(A+B)
전기	0.6767	0.2109	0.8876
당기	0.6767	0.1577	0.8344

※ 총보수비용비율(Total Expense Ratio)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'보수'와 '기타비용'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(보수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.
 ※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(보수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.

6.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

▶ 유동성 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

- 가.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
 -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: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, 주식,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·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유동성 위험: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▶ 주요 위험 관리 방안

- 가.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
 -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,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,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나.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
 - 해당사항 없음

▶ 주요 비상대응계획

-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,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(BCP)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'K200리스크컨트롤링'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(50억원 미만)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)